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헌법심판의 송달에 관한 근거 마련 〉

■ 서영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8059호)

2025.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이 은 정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헌법심판의 송달에 관한 근거 마련	2

I .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영석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2. 11.

(3) 회 부 일 : 2025. 2.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심판에서의 송달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심판의 당사자가 고의적으로 각종 심판 관련 서류의 송달을 피하여 의도적으로 심판을 지연시키는 등의 경우, 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민사소송법」 등의 송달에 관한 규정에 있는 유치송달(「민사소송법」 제186조)이나 우편송달(「민사소송법」 제187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심판에 관한 송달에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형사절차와 성질이 유사한 탄핵심판에는 「형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이 우선적으로 준용됨을 명확히 하여, 심판 절차의 원활하고 신속한 진행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헌법심판의 송달에 관한 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헌법심판의 송달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74조부터 제197조까지를 준용하되,

탄핵심판의 송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를 준용하고, 「민사소송법」 제174조부터 제197조까지는 그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준용하는 내용임(안 제3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35조의2(송달) 심판에서의 송달에는 「민사소송법」 제174조부터 제197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에서의 송달에는 「형사소송법」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를 준용하며 「민사소송법」 제174조부터 제197조까지는 그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준용한다.

나. 현행법상 송달에 관한 규정

송달이란 법원이 재판에 관한 서류¹⁾를 법정의 방식에 따라 당사자 그 밖

1) 소장, 기일통지서, 판결정본 등

의 소송관계인에게 교부하여 그 내용을 알리거나 알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소송상의 제도로써,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에 송달에 관한 규정이 있고, 「헌법재판소법」에서는 헌법재판의 특수성을 반영한 규정을 두되, 그 외에는 제40조(준용규정)²⁾에 따라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이,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이 준용됨.

(1) 「민사소송법」상 송달 관련 규정

송달은 소송관련 내용의 단순 통지³⁾, 기일의 통지⁴⁾, 기간 진행의 개시⁵⁾나 소송 효력 발생⁶⁾ 등의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직접 교부

2) 「헌법재판소법」 제40조(준용규정) ①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② 제1항 후단의 경우에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또는 「행정소송법」이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에 저촉될 때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3) 「민사소송법」 제72조(참가신청의 방식) ②서면으로 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법원은 그 서면을 양쪽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85조(소송고지의 방식) ①소송고지를 위하여서는 그 이유와 소송의 진행정도를 적은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266조(소의 취하) ④소장을 송달한 뒤에는 취하의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273조(준비서면의 제출 등) 준비서면은 그것에 적힌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이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두고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은 상대방에게 그 부분을 송달하여야 한다.

4) 「민사소송법」 제167조(기일의 통지) ① 기일은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 통지한다. 다만, 그 사건으로 출석한 사람에게는 기일을 직접 고지하면 된다.

② 법원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간이한 방법에 따라 기일을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증인 또는 감정인 등에 대하여 법률상의 제재, 그 밖에 기일을 게을리 함에 따른 불이익을 줄 수 없다.

5) 「민사소송법」 제396조(항소기간) ①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서 송달전에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6) 「민사소송법」 제469조(지급명령의 송달) ①지급명령은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즉, ‘교부송달’을 원칙7)(「민사소송법」 제178조)으로 함.

다만, 예외적으로 보충송달, 유치송달, 집행관송달, 우편송달 및 공시송달을 법률이 정한 요건 하에 허용하고 있음.

우선, ‘보충송달’은 근무장소 외의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거나(「민사소송법」 제186조제1항), 근무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 고용·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피용자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함(「민사소송법」 제186조제2항)8).

다음, ‘유치송달’은 서류를 송달받은 사람 또는 제186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넘겨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둘 수 있는 것을 의미함(「민사소송법」 제186조제3항)9).

7) 「민사소송법」 제178조(교부송달의 원칙) ① 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송달할 서류의 제출에 갈음하여 조서, 그 밖의 서면을 작성한 때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8) 「민사소송법」 제186조(보충송달·유치송달) ①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被用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② 근무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제183조제2항의 다른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피용자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다음, ‘집행관송달’은 야간송달·공휴일송달으로서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 공휴일 또는 해뜨기 전이나 해진 뒤에 집행관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람에 의하여 송달하는 것을 의미함¹⁰⁾.

다음, ‘우편송달’은 보충송달·유치송달에 따라 송달할 수 없는 때 법원 사무관등은 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하는 것을 의미하고(「민사소송법」 제187조)¹¹⁾, 송달장소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에 대해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등기우편(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185조제2항)¹²⁾. 이러한 우편송달의 경우 발신주의가 적용되어 우편으로 발송한 때 송달된 것으로 봄(송달간주)¹³⁾.

마지막으로, ‘공시송달’은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

9) 「민사소송법」 제186조(보충송달·유치송달) ③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넘겨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둘 수 있다.

10) 「민사소송법」 제190조(공휴일 등의 송달) ①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공휴일 또는 해뜨기 전이나 해진 뒤에 집행관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람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송달할 서류에 그 사유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송달은 서류를 교부받을 사람이 이를 영수한 때에만 효력을 가진다.

11) 「민사소송법」 제187조(우편송달) 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12) 「민사소송법」 제185조(송달장소변경의 신고의무) ① 당사자·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13) 「민사소송법」 제189조(발신주의) 제185조제2항 또는 제187조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송달할 서류는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공보 등에 게재하는 등¹⁴⁾의 송달을 의미함(「민사소송법」 제194조)¹⁵⁾. 이러한 공시송달은 공시송달을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민사소송법」 제196조)¹⁶⁾

[「민사소송법」 상 송달방법]

구분	송달방법	근거 조문
원칙 (통상의 송달)	교부송달	「민사소송법」 제178조
예외	보충송달	「민사소송법」 제186조제1항·제2항
	유치송달	「민사소송법」 제186조제3항
	집행관송달 (야간·공휴일 송달)	「민사소송법」 제190조제1항
	우편송달 (발송송달)	「민사소송법」 제186조제3항 *발신주의=송달간주
	공시송달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

14) 「민사소송법」 제195조(공시송달의 방법)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15) 「민사소송법」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①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제1항의 경우에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④ 원고가 소권(항소권을 포함한다)을 남용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한 것에 대하여 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⑤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의 공시송달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16) 「민사소송법」 제196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 ① 첫 공시송달은 제19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②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기간은 2월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줄일 수 없다.

(2) 「형사소송법」 상 송달 관련 규정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제1편(총칙) 제7장(송달)에서 소송서류의 송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⁷⁾.

따라서 송달은 본인송달의 원칙에 따라 송달받을 피고인, 증인 등과 같은 본인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분을 교부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178조제1항), 재판장은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을 마친 뒤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주소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법원에 보고할 것을 명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때에는 그 진술없이 재판할 경우가 있음을 경고하여야 함(「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제1항)¹⁸⁾.

한편, 피고인, 대리인, 대표자, 변호인 또는 보조인이 법원 소재지에 서류의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주거 또는 사무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 소재지에 주거 또는 사무소가 있는 자를 송달영수인으로 선임하여 연명한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60조제1항), 송달영수인은 송달에 관하여 본인으로 간주하며 그 주거 또는 사무소는 본인의 주거 또

17) 「형사소송법」 제65조(「민사소송법」의 준용)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18)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주소의 보고와 보정) ① 재판장은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을 마친 뒤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주소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법원에 보고할 것을 명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때에는 그 진술없이 재판할 경우가 있음을 경고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에 대한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 재판장은 그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촉탁, 구인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소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재된 주소에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 때에는 재판장은 검사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주소를 보정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는 사무소로 간주함(「형사소송법」 제60조제2항)¹⁹⁾.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하고 (「민사소송법」 제182조)²⁰⁾, 검사에 대한 송달은 소속 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함(「형사소송법」 제62조)²¹⁾.

송달의 방법은 「민사소송법」과 동일하게 서류를 받을 자에게 교부하는 교부송달이 원칙이고, 보충송달, 유치송달, 우편송달, 공시송달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바,

‘우편송달’의 경우 「민사소송법」은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으나, 「형사소송법」은 서류를 우체에 부친 경우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여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는 점에 차이가 있고(「형사소송법」 제61조)²²⁾,

‘공시송달’의 경우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나

19) 「형사소송법」 제60조(송달받기 위한 신고) ① 피고인, 대리인, 대표자, 변호인 또는 보조인이 법원 소재지에 서류의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주거 또는 사무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 소재지에 주거 또는 사무소 있는 자를 송달영수인으로 선임하여 연명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송달영수인은 송달에 관하여 본인으로 간주하고 그 주거 또는 사무소는 본인의 주거 또는 사무소로 간주한다.

③ 송달영수인의 선임은 같은 지역에 있는 각 심급법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④ 전3항의 규정은 신체구속을 당한 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20) 「민사소송법」 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留置)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한다.

21) 「형사소송법」 제62조(검사에 대한 송달) 검사에 대한 송달은 서류를 소속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22) 「형사소송법」 제61조(우체에 부치는 송달) ① 주거, 사무소 또는 송달영수인의 선임을 신고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서류를 우체에 부치거나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② 서류를 우체에 부친 경우에는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피고인이 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있는 경우 다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때에 실시하는 것으로 그 원인을 달리 정하고 있고²³⁾, 공시송달은 법원이 명하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는데,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공시하며, 최초의 공시송달은 공시한 날로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기는데, 제2회 이후의 공시송달은 5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²⁴⁾.

(3) 「헌법재판소법」상 송달 관련 규정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27조(청구서의 송달)²⁵⁾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본을 피청구기관 또는 피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하고(제1항),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이 있으면 법무부장관 및 당해 소송사건의 당사자에게 그 제청서의 등본을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

제36조(종국결정) 제4항²⁶⁾에서는 종국결정이 선고되면 결정서 정본을

23) 「형사소송법」 제63조(공시송달의 원인) ①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이 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있는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24) 「형사소송법」 제64조(공시송달의 방식) ① 공시송달은 대법원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원이 명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②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전항의 사유를 관보나 신문지상에 공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최초의 공시송달은 제2항의 공시를 한 날로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단, 제2회이후의 공시송달은 5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25) 「헌법재판소법」 제27조(청구서의 송달) ① 헌법재판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본을 피청구기관 또는 피청구인(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이 있으면 법무부장관 및 당해 소송사건의 당사자에게 그 제청서의 등본을 송달한다.

당사자에게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78조(전자적 송달 등)²⁷⁾에서는 헌법재판소는 당사자나 관계인에게 전자정보처리조직과 그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결정서나 이 법에 따른 각종 서류를 송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 26) 「헌법재판소법」 제36조(종국결정) ① 재판부가 심리를 마쳤을 때에는 종국결정을 한다.
② 종국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를 작성하고 심판에 참여한 재판관 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당사자와 심판수행자 또는 대리인의 표시
3. 주문(主文)
4. 이유
5. 결정일
③ 심판에 참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종국결정이 선고되면 서기는 지체 없이 결정서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종국결정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게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시한다.
- 27) 「헌법재판소법」 제78조(전자적 송달 등) ① 헌법재판소는 당사자나 관계인에게 전자정보처리조직과 그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결정서나 이 법에 따른 각종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나 관계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헌법재판소는 당사자나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할 결정서 등의 서류를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 등재한 다음 그 등재 사실을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서류 송달은 서면으로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④ 제2항의 경우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등재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등재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정보처리조직의 장애로 인하여 전자적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에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송달할 수 있다.

다. 검토의견

최근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사건(2024헌나8)에서 접수통지서(답변요구서, 탄핵소추의결서 포함), 준비절차회부결정서, 준비절차 기일통지 및 출석요구, 준비명령 등 서류를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전자방식, 우편, 인편으로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또는 수취 거절 등으로 송달을 실패한바 있음.²⁸⁾

그 후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라 2024. 12. 19. 피청구인에 대하여 발송송달을 시도하였는바 그 효력은 대법원 1998. 7. 13.자 98모53 결정에 의할 때 소송서류가 송달장소에 도달된 때 발생한다”라고 하면서, “이들 서류가 도달된 2024. 12. 20. 피청구인이 이를 실제 수령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송달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밝힌바 있음.²⁹⁾

28) 중앙일보, “13번 거절당한 헌재, 尹 탄핵서류 20일 송달 간주, 심판 절차 시작”, 2024년 12월 23일자 기사. 경향신문, “헌재, 탄핵심판 사건 송달간주 근거 ‘우편송달 수령 없어도 효력 인정’ 대법원 판례”, 2024년 12월 23일자 기사 등 참조

29) 2024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 브리핑 내용 참조

대법원 1998. 7. 13. 98모53 결정(“형사절차에서 송달을 받을 자의 폐문부재로 인하여 소송서류의 송달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 보충송달·유치송달도 할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도 할 수 없으므로 소송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절차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73조), 이 경우 송달의 효력은 발송한 때가 아니라 소송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하므로(형사소송법 제61조 제2항), 소송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아니한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하고, 다만 송달 받을 자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령 없이 등기우편으로 인한 송달의 효과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상소기간의 도과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소권 회복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27조(청구서의 송달), 제78조(전자적 송달 등)와 더불어 제40조(준용규정)³⁰⁾에 근거하여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상 송달에 관한 규정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개정안은 헌법재판에 있어 심판의 송달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송달 방법 및 효력 등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해소하고 헌법재판의 원활하고 신속한 진행이 가능하도록 함에 개정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에 있어 송달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법」에서 헌법재판의 특수성을 반영한 규정은 명시적으로 두되, 제40조(준용규정)를 통해 각 헌법재판의 성격에 맞게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을 준용하고 있는바,

제40조에 따른 일반 준용 규정 외에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등에서 준용되는 여러 규정 중 ‘송달’에 대한 규정에 대하여만 별도의 준용 규정을 두는 것이 전체 법체계에 비추어 적정한지 여부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법제적 측면에서 개정안은 제35조의2를 신설하여 송달과 관련한

30) 「헌법재판소법」 제40조(준용규정) ①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② 제1항 후단의 경우에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또는 「행정소송법」이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에 저촉될 때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의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35조(심판의 지휘와 법정경찰권)³¹⁾는 재판장의 심판정 질서와 변론 지휘 등에 관한 근거 조문으로 송달에 관한 사항과는 그 내용에 차이가 있으므로 제27조(청구서의 송달) 또는 제40조(준용 규정)에 가지번호를 통해 조문을 신설하는 것이 조문 위치상 더 적합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058

31) 「헌법재판소법」 제35조(심판의 지휘와 법정경찰권) ① 재판장은 심판정의 질서와 변론의 지휘 및 평의의 정리(整理)를 담당한다.

② 헌법재판소 심판정의 질서유지와 용어의 사용에 관하여는 「법원조직법」 제58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참고 1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 송달 관련 규정

「민사소송법」

제4절 송달

제174조(직권송달의 원칙) 송달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한다.

제175조(송달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① 송달에 관한 사무는 법원사무관등이 처리한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송달하는 곳의 지방법원에 속한 법원사무관등 또는 집행관에게 제1항의 사무를 촉탁할 수 있다.

제176조(송달기관) ① 송달은 우편 또는 집행관에 의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② 우편에 의한 송달은 우편집배원이 한다.

③ 송달기관이 송달하는 데 필요한 때에는 경찰공무원에게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7조(법원사무관등에 의한 송달) ① 해당 사건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법원사무관등이 직접 송달할 수 있다.

② 법원사무관등이 그 법원안에서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고 영수증을 받은 때에는 송달의 효력을 가진다.

제178조(교부송달의 원칙) ① 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분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송달할 서류의 제출에 갈음하여 조서, 그 밖의 서면을 작성한 때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9조(소송무능력자에게 할 송달) 소송무능력자에게 할 송달은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한다.

제180조(공동대리인에게 할 송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송달은 그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하면 된다.

제181조(군관계인에게 할 송달) 군사용의 청사 또는 선박에 속하여 있는 사람에게 할 송달은 그 청사 또는 선박의 장에게 한다.

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留置)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한다.

제183조(송달장소) ① 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에서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에게 할 송달은 본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등(이하 “근무장소”라 한다)에서 송달할 수 있다.

③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④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제184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당사자·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은 주소등 외의 장소(대한민국안의 장소로 한정한다)를 송달받을 장소로 정하여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송달 영수인을 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

제185조(송달장소변경의 신고의무) ① 당사자·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제186조(보충송달·유치송달) ①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被用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② 근무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제183조제2항의 다른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피용자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③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넘겨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둘 수 있다.

제187조(우편송달) 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제188조(송달함 송달) ① 제183조 내지 제18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안에 송달할 서류를 넣을 함(이하 “송달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송달할 수 있다.

② 송달함을 이용하는 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한다.

③ 송달받을 사람이 송달함에서 서류를 수령하여 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송달함에 서류를 넣은 지 3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④ 송달함의 이용절차와 수수료, 송달함을 이용하는 송달방법 및 송달함으로 송달할 서류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89조(발신주의) 제185조제2항 또는 제187조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190조(공휴일 등의 송달) ①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공휴일 또는 해뜨기 전이나 해진 뒤에 집행관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람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송달할 서류에 그 사유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송달은 서류를 교부받을 사람이 이를 영수한 때에만 효력을 가진다.

제191조(외국에서 하는 송달의 방법) 외국에서 하여야 하는 송달은 재판장이 그 나라

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공사·영사 또는 그 나라의 관할 공공기관에 축탁한다.
제192조(전쟁에 나간 군인 또는 외국에 주재하는 군관계인 등에게 할 송달) ① 전쟁에 나간 군대, 외국에 주둔하는 군대에 근무하는 사람 또는 군에 복무하는 선박의 승무원에게 할 송달은 재판장이 그 소속 사령관에게 축탁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대하여는 제18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3조(송달통지) 송달한 기관은 송달에 관한 사유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법원에 알려야 한다.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①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제1항의 경우에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④ 원고가 소권(항소권을 포함한다)을 남용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한 것에 대하여 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⑤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의 공시송달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제195조(공시송달의 방법)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제196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 ① 첫 공시송달은 제19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②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기간은 2월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줄일 수 없다.

제197조(수명법관 등의 송달권한) 수명법관 및 수탁판사와 송달하는 곳의 지방법원판사도 송달에 대한 재판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7장 송달

제60조(송달받기 위한 신고) ① 피고인, 대리인, 대표자, 변호인 또는 보조인이 법원 소재지에 서류의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주거 또는 사무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 소재지에 주거 또는 사무소 있는 자를 송달영수인으로 선임하여 연명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송달영수인은 송달에 관하여 본인으로 간주하고 그 주거 또는 사무소는 본인의 주거 또는 사무소로 간주한다.

③ 송달영수인의 선임은 같은 지역에 있는 각 심급법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④ 전3항의 규정은 신체구속을 당한 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1조(우체에 부치는 송달) ① 주거, 사무소 또는 송달영수인의 선임을 신고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서류를 우체에 부치거나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② 서류를 우체에 부친 경우에는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62조(검사에 대한 송달) 검사에 대한 송달은 서류를 소속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63조(공시송달의 원인) ①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이 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있는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제64조(공시송달의 방식) ① 공시송달은 대법원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원이 명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②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전항의 사유를 관보나 신문지상에 공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최초의 공시송달은 제2항의 공시를 한 날로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단, 제2회이후의 공시송달은 5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제65조(「민사소송법」의 준용)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